

「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9년 1월 14일, 전수일 의원 발의
- 회부일자 : 2019년 1월 21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43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·규칙심사특별위원회  
(2019년 1월 21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전수일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보충질문 시간에 답변시간을 포함시키고, 본질문한 의원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그 소요시간 측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,
- 우리 군 규칙에서만 정하고 있는 의원의 질문요지서 제출기한을 삭제하여 시·군 규칙의 형평성 제고를 위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보충질문 시간 조정, 보충질문 관련 단서 신설(안 제79조제3항)
  - “답변시간을 제외한 10분” → “답변시간을 포함한 20분”
  - 의장이 허가할 경우 1회에 한하여 5분 추가할 수 있으며, 일괄질문·답변 방식에 따른 보충질문은 본질문한 의원에 한함.
- 질문요지서 제출기한 삭제(안 제79조제5항)
  - “군정질문 5일 전까지” → “미리”
- 용어 정비(안 제79조제6항) “질문” → “답변”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최순철)

- 본 조례안은 군정질문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불분명한 질문과 답변 시간 측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, 우리 군에서만 정하고 있는 의원의 질문요지서 제출기한을 삭제하여 시·군 규칙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**【붙임】**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.

##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9조제3항 중 “10분”을 “20분”으로, “각각 답변시간을 제외하며”를 “답변 시간을 포함하며”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의장이 허가할 경우 1회에 한하여 5분 추가할 수 있으며, 일괄질문·답변 방식에 따른 보충질문은 본질문한 의원에 한하여 할 수 있다.

제79조제5항 중 “그 요지(원고로 갈음할 수 있다)”를 “미리 그 요지”로, “질문요지서를 균정질문 5일(토요일, 공휴일은 제외한다. 이하 기일계산에서 같다)전까지”를 “질문요지서를”로, “질문시간 3일”을 “질문 3일(질문 첫 날을 기준으로 하되,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. 이하 기일계산에서 같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질문 1일”을 “답변 1일”로 한다.

### 부칙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⑥ 군수는 제5항의 질문요지서에 대한 구체적 서면답변서를 늦어도 질문 1일 전까지 의장에게 보내야 하며, 의장은 송부 받은 서면답변서를 해당 의원에게 지체 없이 배부해야 한다.

⑦ (생략)

계산에서 같다) --.

⑥ -----  
-----  
---- 답변 1일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⑦ (현행과 같음)